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97 발의연월일 : 2024. 10. 31.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김상훈

서미화 · 서천호 · 최수진

한지아 • 백종헌 • 서명옥

진종오 • 박수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등록증은"을 "등록증(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한다.

-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 ⑤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등록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 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2조의3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 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반환"을 "반환·회수"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모 바일 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제2호 중 "제32조제5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2의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2의3. 제3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본 인 또는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생 략)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신 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 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_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④ 등록증(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등록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

소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신 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 증의 <u>반환</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 1. (생략)
 - 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 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연의2.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목
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모바일 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u>⑥</u> 제1항, 제2항 및 제4항
<u>반환·회수</u>
<u>.</u>
제87조(벌칙)
1. (현행과 같음)
2. <u>제32조제4항</u>
2의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
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이미
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u><신 설></u>	2의3. 제3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등록증
	<u>을 사용한 자</u>
3. ~ 5. 삭 제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